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294
- 발 의 자 : 김호평 의원 외 13명
- 발 의 일 : 2020년 2월 5일
- 회 부 일 : 2020년 2월 12일

## 2.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하여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 나.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 다. 청년의 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라.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창을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다. 입법예고(2020. 2. 17. ~ 2020. 2. 24.)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2020. 2. 4.)에 따라 동 법 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
- 제정된 「청년기본법」(참고 1 참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8월 5일이나, 법령의 취지를 살려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조).
- **(기본이념)**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제2조).
- **(정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제4조 및 제5조).
- **(청년의 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제16조).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회 보고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이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청은 개정조례안에 동의하고 있음.

### 1) 청년의 범위(안 제3조제1호)

- 안 제3조는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 <u>청년고용촉진 특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1. ----- 「 <u>청년기본법</u> 」----- ----- -----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당시(2015년) 「청년기본법」 등의 입법 미비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sup>1)</sup>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금번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조례상 청년의 범위를 동 법(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다만, 「청년기본법」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

청년기본법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p>

-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일된 정의가 미진했던 실정이며, 여전히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규정 및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내 법령 및 정책 상 청년의 범위>**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조세 특례 제한법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원칙: 15세~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청년창업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청년상시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2쪽) 인용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의 범위>**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서울	15세~34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강원	18세~34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8세~34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충북	15세~39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대구	19세~39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충남	18세~34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인천	19세~39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북	18세~39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광주	19세~39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전남	18세~39세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대전	19세~39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경북	15세~39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울산	15세~34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경남	19세~34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세종	15세~34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주	19세~34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	15세~3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3쪽) 재인용

○ 서울시의 정책별 청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시 청년 사업별 청년 연령 현황>**

정책명	청년의 범위	관련 근거(조례 등)
청년수당	만19 ~ 만34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청년일자리	*만18 ~ 만34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제2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 만18세 : 고졸 기준
청년주택	만19 ~ 만39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청년공간	만19 ~ 만39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청년창업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위원	만19 ~ 39	계획서
청년미취업자 지원	15 ~ 29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청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면 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정책별 효과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을 준용하고,
  -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기본법」 제정이후에도 청소년의 범위<sup>2)</sup>와 청년의 범위가 중복되는 점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바, 정책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청년층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청년의 국제협력(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서울시 청년사업 중 청년의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청년기본법
<신 설>	<u>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시</u> <u>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u> <u>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u> <u>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u> <u>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 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 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년의 국제협력 강화 등 동 사업이 서울시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 청년들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의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집행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청년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감당할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년기본법」이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유사 법령<sup>3)</sup>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

3) 정부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관계법령	관련 조문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u>일부</u> 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u>전부 또는 일부</u> 를 보조할 수 있다.
아동 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u>전부 또는 일부</u> 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한 역할 및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분담, 경비의 보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 국비 조달 등 소요 자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 확보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p>

### 3) 청년의 날(안 제22조의2)

- 안 제22조의2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계법령	관련 조문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현 행	개 정 안	청년기본법
<신 설>	<u>제22조의2(청년의 날) 시장 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 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 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 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u>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 한다.

- 서울시는 이미 2015년부터 매년 “서울청년주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 「청년기본법」에서 지정하는 청년의 날에 맞춰 통일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청년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문제를 공유하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서울청년주간 집행내역〉

실행 연도	집행액	비고
2017 서울청년주간	156,766천원	청년허브에서 사업 집행
2018 서울청년주간	132,634천원	청년허브에서 사업 집행
2019 서울청년주간	180,611천원	청년청에서 (용역) 집행 - 최계바라 기획사 및 신촌문화연구그룹



2019년 10월 28일~ 11월 3일	시선이 만나다	5,4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학회: 청년연구자 학술모임</li> <li>- 청년포럼: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워크숍, 토론회</li> <li>- 청년활동박람회: 청년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캠페인 및 정책홍보</li> <li>- 청년교류해: 전국활동가 및 연구자 등 교류회</li> <li>-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활동 공간투어</li> </ul>
-----------------------------	------------	--------	---	--

- 다만,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 인바, 대통령령 제정 사항 등 향후 추이에 따른 조례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4) 표창(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26조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청년기본법
<신설>	제24조(표창)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p><u>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p>
-----------------------------------	---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서울시 시민표창의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시민 표창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454건(5.2%p)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표창의 영예성과 엄중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민 표창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개년도 시민표창 운영실적〉

(단위 : 명)

연도	총계	시 민 표 창		
		표창장	감사장(감사패)	상장
2015년	8,595(↑28.2%)	5,273	143	3,179
2016년	8,822(↑2.6%)	5,685	75	3,062
2017년	8,873(↑0.6%)	5,882	183	3,040
2018년	8,785(↓1.1%)	5,512	228	3,045
<b>2019년</b>	<b>9,049(↑2.9%)</b>	<b>5,369</b>	<b>173</b>	<b>3,507</b>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과) 044-200-632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

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 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6956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